##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61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추미애・박홍배・조 국

조인철 • 송옥주 • 전재수

박균택 • 부승찬 • 전종덕

박희승 • 박선원 • 오세희

한정애 • 진성준 • 백승아

민형배 • 서영교 • 허 영

위성락 · 정혜경 · 용혜인

정준호 · 김 현 · 양부남

전진숙 • 이훈기 의원

(26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"관련자"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.

2023년 12월 "5·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"는 5·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"진상규명조사보고서" 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"진상규명 결정 통지서"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5·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

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.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, 형평성,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,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,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 ·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: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보상금) ① 관련자 또는 그	제5조(보상금) ①		
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			
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			
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			
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			
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		
	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: 피		
	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		
	령령으로 정한 금액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